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14호

한눈에 확인하는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방법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CHINA

2022 년 14 호

구분	제 목	키워드
심층이슈	한눈에 확인하는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방법 1. 진출 준비 단계 2. 협상 단계 3. 현지화 단계	보고서
센터안내	KOCCA 북경비즈니스센터 소개	시설/사업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2.09.07



한눈에 확인하는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방법

※ 요약

- ✔ 본 보고서는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방법에 대해 ‘1. 진출 준비 단계’, ‘2. 협상 단계’, ‘3. 현지화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 진출 준비단계에는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중국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홍보’ 등이 포함됨
 - 중국 콘텐츠산업은 200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발전 방향을 좌우한다는 특징을 가짐
 - 중국 콘텐츠시장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막대한 중국 자본과 중국 정부의 자국 문화 보호 등으로 쉽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현지 전문가, 현지 파트너사 등을 통한 시장 정보 확보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 참석을 통해 중국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진출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협상 단계에는 라이선스 계약, 수출 또는 합작(공동제작), 투자유치 등의 절차로 진행됨
 - 중국 시장은 점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임
 - 협상 단계에서의 관건은 진출 당사자에게 있어 가장 적절한 중국 파트너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고문, 컨설턴트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음
- ✔ 마지막으로 현지화 단계에는 대표처 설립, 외국투자법인 설립,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포함됨
 - 대표처 설립은 자본등록이 필요 없고, 설립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외국투자법인 설립 방법으로는 외국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필요함

I 진출 준비 단계

1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 문화산업 정의 및 분류

- 중국은 문화산업을 “문화 및 관련산업”으로 규정하며, 문화를 핵심 내용으로 사람들의 정신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창작, 제조, 전파, 전시 등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정의함
- * 뉴스정보서비스, 콘텐츠 창작 및 생산, 창의디자인서비스, 문화전파플랫폼, 문화투자운영과 문화미디어 여가서비스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화보조 생산활동과 중개서비스, 문화장비생산 및 문화소비기기생산(제작, 판매포함) 등이 문화산업에 포함됨

✓ 중국 문화산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 중국의 문화산업은 2000 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문화산업의 최대 동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와 지원에 있음
- * 고도로 집중화된 정치/문화 체제 하에서 중국 정부는 모든 문화자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산업 정책 및 산업 발전 계획이 문화산업 발전의 전제 및 방향을 좌우함. 즉, 중국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음
- *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에 따른 문화산업과 기타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문화산업의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콘텐츠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짐
- 문화 소비 시장 주력소비층의 저령화 추세
- * 2020 문화산업 소비층 분석에 따르면 특히 18~25세 젊은 소비자층의 문화 소비 욕망과 수준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90허우(1990년대 출생한 세대)와 00허우(2000년대 출생한 세대)가 문화 소비 시장의 주력군으로 급부상함
- 금융과 문화산업의 융합이 뚜렷함
- * 정부 주도의 펀드로부터 VC/PE기구투자에서 문화산업 펀드까지 산업자본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문화산업 주관부서의 조직개편

- 2018 년 3 월 정부 조직 개편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조직도 대폭 개편됨
- * 중앙선전부의 기능확대 : 뉴스, 출판, 영화관리업무는 중앙선전부에 귀속, 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의 현판을 공동으로 걸게 됨
- * 국가광전총국 출범 : 라디오TV관리 정책제정, 라디오TV 사업산업발전계획 및 지도조정, 라디오TV

와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내용 및 품질관리, 감독, 심의, 수입수출관리, 웹드라마 등 온라인시청각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및 심의

- * 중앙TV방송국 출범 :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기존 CCTV, CGTN, CNR, CRI를 통합한 부서임
- * 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출범 : 문화 및 문화산업발전, 관광자원 개발, 기존 문화부와 국가여유국(旅遊局)의 업무 통합

❖ 중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관련 체계의 문제점

- 콘텐츠 제작, 유통, 방영, 수출입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여러 정부 부문들이 중복 관리 감독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국가광전총국과 신문출판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서, 각종 부문 규정과 통지, 가이드, 의견 등 규제성이 강한 규정을 수시로 발표하며 콘텐츠산업 전반을 감독/관리함
- 이에 따라 한중 업체 간의 콘텐츠에 관한 협력 과정에 있어서도 중국 내 이런 복잡한 관리체계의 허가 절차를 대부분 중국업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중국 시장 조사방법



- ❖ 중국 콘텐츠시장은 치열한 경쟁은 물론, 막대한 중국 자본과 중국 정부의 자국 문화 보호 등으로 쉽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정보, 중국 시장정보, 콘텐츠전문가 자문(회계 및 법률 등)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표-01]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시장조사 관련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비고
중국 시장정보 서비스	중국 콘텐츠시장 정보, 전시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국 기업정보 서비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¹⁾ 과 전문기업정보조사 툴(企查查、企信宝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등록번호, 등록자본 등 기본정보와 경영상태 및 주주정보 등 다양한 정보조사 가능
콘텐츠전문가 자문 서비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장르별, 분야별(회계, 법률, 마케팅) 전문가에게 쉽게 문의하고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음

✔ 기타 방법

[표-02] 중국 시장조사를 위한 기타 방법

구분	세부 내용
현지 전문 컨설팅 회사	- 중국 문화산업의 규제정책, 시장의 특성, 진출방법 컨설팅 - 투자자, 바이어 매칭 협조 요청
중국 콘텐츠 사업 종사자	- 중국에서 다년간 콘텐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전문 인원 - 중국 콘텐츠시장 연구기관
중국 파트너	-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에는 중국업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임
전시회 참여, 현지 답사 등	-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전시회 참가 - 문화시장 활성화된 1선 도시, 한창 발전하고 있는 2선 도시, 잠재력이 풍부한 3선 도시 현지 답사 - 기타 각종 콘텐츠 중국 시장 분석보고서 참조

3 전시회 참가 방법



- ✔ 연평균 100 여 회 이상 진행되는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각종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하여 중국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진출방법을 적극 모색함

✔ 전시회 참가 단계별 체크 포인트

[표-03] 중국 콘텐츠시장 전시회 참가 단계별 체크 포인트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전시회 참가목표 설정	* 전시회 목표 기준 - 전략적인 목표 / 콘텐츠 지향 목표 / 바이어, 투자자, 협력파트너 지향목표 / 브랜드 지향 목표 / 산출 지향 목표 등
(2단계)	* 전시회 선정 기준

1) 2018년 3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공상행정관리총국을 폐지하고 원 직책을 새로 설립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 전함. 2018년 4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립됨

참가전시회 선정 지원사업 조회	- 타깃 수요층을 고려 / 최근 콘텐츠 수요 증가 지역 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 기존 전시회 바이어, 참관객 규모 확인, 전시회 주관사의 지원사항 등
(3단계) 전시회 참가 신청 및 예산 책정	* 전시회 주최 측에 신청서 제출 * 예산 책정 - 부스 임차료, 차량 및 비품 임차료, 전시장 디자인 및 설치, 물품 운송 및 보관, 인력(상담, 통역 등), 바이어 사전 섭외, 광고, 출장경비, 바이어 접대비 등
(4단계) 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	* 부스 위치, 규모, 형태 - 경쟁업체와의 접근성, 관람객의 이동 경로, 바이어와의 상담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 규모는 예산, 전시품, 예상 방문객, 임차 가능 면적, 상담 인원수에 따라 결정 * 서비스업체 선정 - 견적서와 시공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디스플레이 계획 - 콘텐츠 성격, 희망사항, 예산 등에 따라 디스플레이 - 동영상 자료와 소개자료 중문화
(5단계) 사전 홍보전략 수립 및 마케팅 활동	* 바이어 명단 작성 또는 외부 회사에 위탁하여 바이어 섭외 * 초청장 발송 * 위챗, 사이트 등 광고 * 상담계획 수립
(6단계) 전시회 준비 및 발송	* 전시품 점검 및 발송 방법 확인 - 전시품 구성 / 일정 확인 / 포장, 운송 방법, 운송 비용 확인
(7단계) 전시장 설치	* 공간 구성 * 전시 보조물 선정 - 업체 현황 판넬, 인포메이션, 등록 데스크, 사인물 등 전시 보조물 선정 사용 * 전시품 설치
(8단계) 전시회 참가 및 상담	* 바이어 미팅 및 상담 * 협상 및 마무리 - 계약조건, 가격, 납품 등 상담,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
(9단계) 전시품 반송, 사후 관리	* 전시품 반송 - 전시회가 끝난 이후 전시품은 반송, 판매, 기증 및 폐기 * 사후 관리 - 고객의 문의사항, 콘텐츠에 대한 정보요청 처리

4 홍보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챗 공식계정 및 전시관을 통한 홍보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챗 공식계정 활용
 - * Korea Content 공식계정
 - 위챗 공식계정을 통하여 한국 콘텐츠를 홍보하고 한국 콘텐츠기업 중국 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
 - 콘텐츠 : 음악, 게임, 드라마 분야 회사, 작품, 가수, 감독, 주연배우 소개, 애니메이션, 재중국 한국 콘텐츠사업자 소개 및 소식, 한중 마켓 활동, 공연, 스타 소식 및 팔로우 수 증가에 필요한 이벤트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전시관 이용
 -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전시관은 베이징 현지에서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를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는 공간임. 기본전시(공간 및 기존 전시매체)의 경우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화된 전시 등은 별도 문의가 필요함

✓ 중국 진출을 알리고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이벤트 개최
 - * 발표회 : 게임 신제품 발표회, 공연 발표회, 영화 시사회 등
 - 기획 : 시간, 도시, 장소, 프로그램, 참석자, 컨셉 등을 기획(기획사 위탁 가능)
 - 시행 : 기획된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 과정 모니터링
 - 결과 검색 : 뉴스 보도결과를 검색하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결과 체크
- * 팬 사인회
 - 팬클럽과 연계하여 참석자 규모 및 프로그램 협상
 - 행사 안전 확보
- * 기타 실물 판촉행사와 공동 마케팅
 - 캐릭터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물 판촉(마케팅 행사)과 공동 마케팅
- 매체 홍보
 - * 기사성 내용 포털 사이트, 전문사이트 게재
 - 텐센트, 소후, 시나 등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 기사성 콘텐츠 게시를 통한 홍보
 - *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전통 매체 활용
 - 뉴스형식 또는 보도형식으로 방영 또는 게재
 - * 1인 SNS공식계정,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II 협상 단계

1 라이선스 계약방법

>>>

- ✓ 중국 시장은 점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진출 방식 가운데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선스 계약임. 중국 파트너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 있음
- ✓ 중국 파트너의 자격요건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에 진출할 때 관건은 적절한 중국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임
 - 중국 법률은 출판, 음악, 영상, 게임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중국 파트너가 합법적인 영업과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며, 이를 계약서상에 상대방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표-04] 중국 콘텐츠산업별 라이선스 계약 시 구비사항

산업별	구비사항
음반산업	-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입업체 - 음반 발행 허가 취득
영상산업	- 라이선스 목적물에 따라 영상물을 상영, 방영할 수 있는 비준증서 취득 - DVD, VCD, CD 등의 제품으로 출판할 경우 출판허가증 취득
게임산업	-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 통신부가서비스사업허가증(SP 허가증), 판호 취득
캐릭터산업	-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 등 여러 산업과 연관되어 각각의 산업에 맞는 허가증 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집조 취득

- ✓ 음악 라이선스 계약 전 체크포인트
 - 음악 관련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음악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 저작권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협회)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중국 진출 시 이익관계의 분배에 대해 이들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중국은 판권국 산하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두 곳이 저작권 관련 신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음²⁾

✔ 영상 라이선스 계약 전 체크포인트

- 영상산업의 경우 중국의 저작권법과 출판, 방송 또는 영화 관련 법률규제를 잘 살펴봐야 함
- 저작권법 집행에 있어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됨
- 그에 반해 중국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아직도 콘텐츠사업에 대해 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임
- 영상사업의 경우 상영 또는 방영할 수 없는 내용과 영상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자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격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이런 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

✔ 인터넷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전 체크포인트

- 인터넷 문화업체와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저작물 등 인터넷 문화 콘텐츠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국 측 인터넷 문화사업업체는 문화여유부, 광전총국 또는 신문출판서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 모바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전 체크포인트

-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모바일 통신사업자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 ICP(Internet Content Provider)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이 관련되는 다층적 사업구조의 특성상 과금체계와 수익분배구조가 매우 복잡함
-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로열티를 수취할 것인지,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로열티 지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약정해야 함

2)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차이점 : ①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상이함.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인 방송권,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에만 신탁을 하고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가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신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② 구체적인 권리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범위와 관련하여 음악작품에 대한 복제 즉, 공표된 음반, 컴퓨터 노래방 프로그램 제작, 콘서트, 식당, 호텔, 노래방, 공항/기차 등 공공장소에서의 배경음악, TV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음악작품 사용 등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수권 권리를 담당 ③ 저작재산권 일체가 아니라 일부의 권리만 신탁하는 것으로 음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권리나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라이선스 계약 시 유의사항

- 권리 및 지역 허가의 범위
 - * 라이선스 사용 가능한 권리의 범위와 지역 허가범위를 가능한 명확히 해야 함
 - 진출하는 아이템에 따라 한 가지 분야에만 관련된 경우도 있지만,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여러 가지 형태/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사용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점사용권이라고 해도 대만, 홍콩, 마카오는 계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별도의 조항을 따로 두어 명시하고, 도서 출판계약의 경우 화교가 많은 동남아 등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여 수출금지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아이템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전국서비스업자와 지역서비스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적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독점라이선스 허가 여부
 - * 중국 측 당사자에게 독점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줄 것인지 결정 및 계약서 명시
 - 많은 중국 파트너들은 독점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선스 입장에서 볼 때 독점사용권의 부여는 중국을 각 성별 또는 몇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 지역적인 독점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중국 사업은 전적으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함
 - 협상 결과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기간별 실적에 대한 목표량을 정하고 실적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쟁 해결
 - * 공정성 보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분쟁 해결 조항은 매우 중요. 소송과 중재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기관을 관할로 할 것인가는 모두 당사자 이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임
 - 중국의 현행 사법제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 지방정부의 재정 등에 제약되어 있어 그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 보장에 다소 신뢰가 떨어지고 복잡한 절차 및 시간 지연, 고비용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신용이 좋은 중재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어 해외 투자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다수가 중재를 선호하고 있음
 - 계약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측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 투자자에 불리한 것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이라 할 수 있음. 형평성이나 비용,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
 -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에는 중재기관이 각 지역별로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재기관을 정하고 해당 중재기관의 명칭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임. 만약 관할 중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중재와 소송을 병기할 경우 중재계약이 무효가 되어 정식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아울러 중국 음악저작권협회나 영화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 관리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시 당해 협회로부터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이 밖에도 구두계약의 효력, 보증인, 공증, 담당기관 인허가 등의 계약 관련 세부사항에도 유의하여야 하며, 변호사, 회계사, 고문, 컨설턴트 등을 초빙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보다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2 수출 또는 합작(공동제작) 방법

»»

- ✔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영화의 합작(공동) 제작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중국업체이어야만 협력 가능하고 합작 제작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내용 심의 및 기술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방영이 가능함

✔ 중국 파트너의 자격요건 및 협력방식

[표-05] 중국 콘텐츠산업 장르별 협력파트너 자격요건 및 협력방식

산업	중국 파트너의 자격요건	협력방식	심의기관
드라마	광전총국에서 지정한 업체	수출	광전총국
	드라마제작갑종(甲种)허가증 취득업체	연합(공동)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방송 프로그램	방송드라마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포맷 수출	광전총국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방송제작 경영허가증> 취득업체	연합(공동)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광전총국
	광전총국에서 지정한 업체	수출	
영화	영화제작허가증	연합(공동)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중앙선전부 영화국
	차이나필름, 화샤영화발행회사	수출	
게임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ICP	수출	문화관광부
음반&영상	음반영상제품 경영허가증	수출	신문출판서
		판매합자회사 설립	신문출판서 시장감독관리국
공연	영업성공연허가증	직접도입방식	문화관광부
		판권도입방식	
뉴미디어	인터넷영상음반프로그램전파허가증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부가가치서비스경영허가증	판권 거래, 공동 제작	산업정보화부 광전총국 문화관광부

3 투자유치 협상



❖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확대 장려

- '저우추취(走出去)' 는 직역하면 '밖으로 나간다' 는 의미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글로벌화/go global 에 해당)을 뜻함. 중국은 최근 들어 '저우추취' 를 통해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장려하는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해외 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M&A 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III 현지화 단계

1 대표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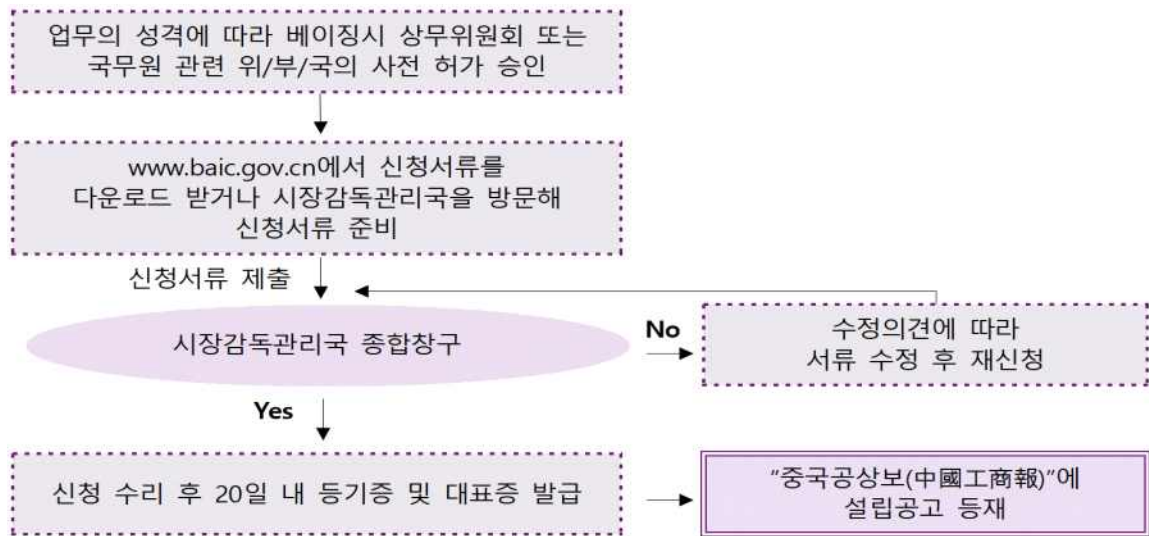
❖ 대표처 설립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가 없고, 설립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낮은 원가로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 로 불리며 중국 법률용어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임
-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외국 기업과 관련한 비영리성 활동을 진행하는 단어 뜻 그대로 연락사무소를 뜻하며, 이렇게 설립된 대표기관은 법인자격이 없음
- 많은 해외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표처 설립을 통해 중국 해당 지역에 대해 정보 수집, 기초 업무 연락을 하면서 향후 투자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 왔음
- 대표처의 경영범위는 등기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기관(특수 산업은 심사 필요) 확인 후 경영범위는 상설대표기관 등기증에 기재되고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관은 등기증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처는 독자적으로 영업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고 수입을 발생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은 본사를 위한 연락서비스 등에 제한됨. 즉, 대표처는 수입이 없으므로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지급해야 함
- 대표처는 본격 진출에 앞서, 사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로 널리 활용됨. 각종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자 대표처는 소비행위, 시장수요, 시장특성과 변화 추이, 지방법률 및 법규, 경영원가 등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아울러 대표처는 기타

합자기업 및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업무파트너 및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음

• 대표처 설립등기증 발급 방법



[표-06]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설립절차 (오증합일³⁾ 개혁 후 절차)

단계 구분	관련 기관	진행 내용
① 설립 신청	관계부서	기존에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비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외국기업이 직접 설립 신청 가능. 방송업체 같은 경우 광전총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② 설립 등기증	시장감독관리국 종합창구	등기증 신청 오증합일 정책으로 5종 증빙서류 원스톱 등록
③ 공안국등록 인감 제작	공안국	공안국 등록 및 대표처 직인, 수석대표 인감, 재무전용인감 제작
④ 외환등록	외화관리국	외환관리국 등록 및 외환/위안화 계정 개설 신청
⑤ 계좌개설	은행	은행 계정 개설 대표처-세무소-은행 3자 계약 체결(세금 납부용)
⑥ 취업증	노동국	취업허가증, 취업증 수속
⑦ 취업비자	공안국	복수비자 신청하여 장기 체류

3) 오증합일은 시장감독관리국의 영업허가증,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세무국의 세무등기증, 통계국(統計局)의 통계등기증,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의 사회보험등기증 총 5개 증서를 통합하는 것임. 오증합일(五證合一) 정책이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표-07] 대표처 설립 관련 세부정보

구분	세부 정보
담당기관	담당기관 : 시장감독관리국 - 신청 수리 후 15일 내 비준여부 결정, 결정 후 5일 내 등기증 발급 - 시장감독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및 신청서 다운로드
등기사항	① 대표처 명칭 - 외국기업 국가 이름 + 외국기업 중문명 + 소재 도시명 + '대표처'로 구성 - 대표처는 다음 내용과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됨 - 중국 국가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되는 경우 - 국제조직명칭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금지하는 경우 - 정상 대표처 명칭: 예를 들면 한국○○주식회사 베이징대표처 ② 대표처 수석대표 및 대표 - 외국기업은 1명의 수석대표,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로 1~3명 대표 파견 가능 - 다음의 경우 수석대표 또는 대표를 담임할 수 없음 - 중국 국가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 형벌을 받은 경우 - 국가안전 또는 사회 공익에 피해를 주는 위법활동 종사로 인해 설립등기 취소, 폐쇄된 대표기관의 수석대표, 대표로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③ 업무범위 - 대표처는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 하고 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외국기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 외국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 활동 - 외국기업 제품판매, 서비스제공, 중국내 구매, 중국내 투자 관련 연락 활동 ④ 사업장소 - 사무용으로 지정된 건물 중 자체 선택 ⑤ 상주기간 - 외국기업의 본국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외국기업명칭 및 주소
구비서류	① 대표기관 설립등기신청서 (본인 서명) ② 외국기업 주소증명과 2년 이상 존속 합법경영 증명서류(사업자 등록) - 한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중국주한영사관 확인 필요 - 공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③ 외국기업 정관 ④ 외국기업의 수석대표, 대표에 대한 임명장 ⑤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 학력, 경력은 시간대로 이어져야 하고 중간에 기간이 비어있으면 안 됨 - 38mm*51mm 대표 사진 4장 - 대표 신분증명 제출 시 외국인의 경우 여권 복사본 제출 - 중국인을 수석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할 경우 외국기업인력서비스유한공사

	(FESCO ⁴⁾ 등 포함) 기관의 파견서 제출
	⑥ 본사와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증명
	⑦ 대표처 사업장의 합법적인 사용증명
	- 자체 소유 부동산일 경우 재산권증명(방지산증(房地產證)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인 경우 1년 이상 임대계약 원본 및 복사본 제출 - 이상 서류 중 중국어가 아닌 기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중문 번역문을 별첨해야 하고 번역기관의 확인도장을 날인해야 함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으로 대표기관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기업은 비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관련 비준문서를 제출해야 함 - 중국에서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영리성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관을 설립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함 - 외국 광고기업, 의료(醫療)류기업, 무역기업, 제조기업, 포워딩기업, 도급업기업, 컨설팅기업, 투자기업, 임대기업, 도로운송기업 등은 관련 부문 허가없이 직접 시장감독관리국에 상주 대표처 설립 신청 가능

[표-08] 공안국 인감제작 관련 세부정보

구분	세부 정보
담당기관	담당기관 : 지정된 인감제작소(당일 가능) 제작해야 하는 인감 대표처 직인, 수석대표 인감, 재무전용인감
구비서류	등록자료 - 인감제작신청(인감제작 사유, 명칭, 수량 기재)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원본, 복사본 - 수석대표가 직접 신청시 인감제작 신청서 및 본인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제 - 대리인이 신청시 수석대표 여권 복사본, 수석대표가 서명한 수권위탁서,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등 자료
조직기구 바코드증 등	2016년 10월 1일부터 오증합일(五證合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는 생략됨

[표-09] 외환 등록 및 계정 개설 관련 세부정보

구분	세부 정보
담당기관	담당기관 : 외환관리국, 은행 - 외환 등록 및 외환계정 신청(1일 소요) => <상주기관 외환계정 등록> 취득 - 은행 계정 개설(10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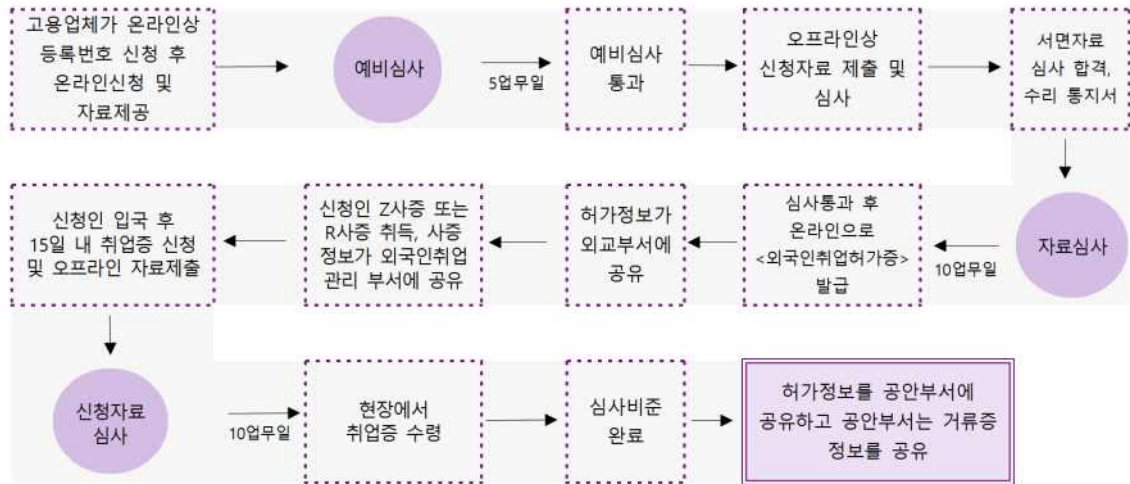
4) FESCO(Foreign Enterprises Service Corporation) : 외국기업 대표처는 법인자격이 없으므로 규정상 중국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Fesco와 같은 인력자원기업을 통하여 고용해야 함

은행 선정	- 개설사무소-은행-대표처 3자 계약을 통해 대표처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은행에서 국고로 자동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중국계 은행에 기본 계정을 개설 - 현금인출,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한국계 은행에 보조 계정을 개설하는 것이 좋음
구비서류	-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복사본(대표처 직인 날인) - 기타 외환관리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표-10] 취업증 및 취업비자 발급 관련 세부정보

구분	세부 정보
취업허가증 발급 제출서류	① 외국인 고용업체 사이트등록 - 고용업체가 외국인재중국노동관리시스템 http://fwp.safea.gov.cn/ 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할 시 날인된 정보등록표, 영업집조 등 합법등기증명, 책임자 및 취업자 신분증명 등 전자자료를 제출함 ② 외국인취업허가증 - 최고학위증서또는 기타 직업자격증명 등, 무범죄기록증명, 신체검사증명, 노동계약 또는 임직증명(다국적회사 파견서 포함), 여권, 사진, 동행가족자료, 기타 자료 등 제출함 ③ 취업증 - 상기 시스템에 날인된 외국인재중국노동허가신청표, 업무경력증명, Z여권 또는 기타 유효 서류허가, 노동계약, 신체검사증명 등을 제출함. 또한 허가증 신청단계에서 각 원본을 수리기구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음 ④ 거류증 -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사증신청서, 취업증, 사진, 신체건강증명, 여권 및 Z사증, 등기증, 임시숙박등기표, 가족일 경우 가족증명서류 등 제출(업무일 기준 5-7일 소요) ⑤ 취업증 연장시 - 해당 시 노동사회보장국 외국인 취업증 관리부서에 외국인취업 연기신청표, 사진, 등기증, 여권, 취업증 원본 등 제출, 취업증 만기 30일 전에 신청(서류 충족시 즉시 연장)
취업허가증과 취업증의 차이점	① 취업허가증 - 취업허가증은 중국에서 정식 취업 전에 받은 서류로써 중국 취업비자 Z사증을 받는데 필요함 ② 취업증 - 취업증은 정식 취업 후 거류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하며 재취업할 때는 취업증만 연장하면 됨 ③ 예외 규정 - 다음의 외국인은 취업증 없이 중국 취업이 가능함 - "외국전문가" 증명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시간 90일 이하인 경우 - 중국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임시영업공연허가증"으로 공연을 하는 외국인

- 일반외국인 중국 취업허가신청 심사 절차 (90 일 이상 소요)



- * 법인장 또는 수석대표의 취업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통상 1년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취업증과 거류증을 매년 연장해야 함

[표-11] 기타 절차와 유의사항

구분	세부 정보
기타 절차	본사로부터 사무용 차량 및 사무기구를 수입한다던가, 샘플을 수입할 때 세관 등록이 필요함.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복사본(대표처 직인 날인) - 수석대표 취업증, 여권(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대표처 직인 날인) - 세관등기신청서(대표처 직인 날인)
유의사항	① 허가 절차 - 기존에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비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비준절차가 변경된 후로는 지정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외국기업이 직접 설립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각 단계에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를 한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신용 상태 - 대표처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해당 소재 국가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함 ③ 사무실 선정 -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대표처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감독관리국에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처 설립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함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사용증 취득이 용이하고 토지양도대금이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주거용 허가를 받고 준공 후에는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음 - 사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참조) 대표처의 말소
 - * 중국 진출의 전략변경과 해당기업의 필요에 의해 대표처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처 말소 절차는 설립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움
 - * 1차적으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 절차와 반대 방향으로 말소 신청수속을 진행함
 - * 지방세무국에서 개인소득세 징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석대표, 대표의 본국 수입증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임
 - * 중국의 세법상 수석대표, 대표는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본인의 제반 소득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본국에서 받는 소득도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 많은 한국기업 중국대표처의 대표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데 중국에서만 받는 소득부분만을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말소 절차 요구에 의해 본국의 소득증명을 제출시 탈세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 * 결국 말소신청이 수리가 되지 않고, 대표처를 그대로 두면 일정 기간 지나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등기증을 “吊销(취소)”함
 - * 이럴 경우 해외 본사는 사후에 다시는 중국에 대표처를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수석대표는 5년간 중국 법인의 법인대표를 임할 수 없게 됨

2

외국투자법인 설립



- ✔ 외국투자법인 설립 방법으로는 외국독자기업과 중외합자기업 그리고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필요

[표-12] 외국투자법인 설립 방법 비교

구분	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근거법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출자기한	경영기한 내 출자 완료	경영기한 내 출자 완료	경영기한 내 출자 완료
이윤분배기준	투자자 단독 결정	지분비율에 따름	계약내용에 따름
경영관리방식	투자자 독자경영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공동경영 - 투자자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경영기한	업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설립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기관에서 비준함		

최고의사결정	주주총회(투자자)	동사회	- 동사회,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외국투자자 최저지분	등록자본금의 100%	등록자본금의 25% ⁵⁾	
투자회수 방식	- 당기 순이익 - 청산이익	- 당기 순이익 배분 - 청산이익 배분	- 당기 총이익 배분 - 당기 판매수입 배분 - 당기 생산품 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 금액
기업부채 책임범위	출자액한도	지분을 비례,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청산자산처리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을 배분	계약 내용에 의거 배분

[표-13]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의 구분

구분	세부 정보
외자기업	- 일부 업종에 투자 및 경영이 제한됨 - 자본 차입이 자유롭고 지분관계가 명확 - 모기업과의 협조가 원활 - 직원 고용이 자율적 진행 - 최근 합자&합작기업보다 수가 급속 증가
합자기업	- 중국 측의 네트워크 활용 가능 - 자본 투자비율에 따라 경영권, 이익분배, 손실부담 등 결정 - 외국 측의 투자비율이 일반적으로 25% 이상 - 양측 회사의 성공적인 협조와 조율 필요 - 투자금 조기 회수, 이익 배분 등에 규제가 많음
합작기업	- 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 등 모든 기업경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 - 계약기간이 짧고 분쟁 발생 여지가 많음 - 최근 이런 형식의 진출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

•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사항

* <회사법> 및 외상투자법인 관련 규정은 후에,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자본금에 대해 실제 납입제도에서 납입등기제도로 변경됨. 국무원 관련 지도의견에 따르면 “등록자본금 등 기제도 개혁 조치를 관철하고 내외자기업에게 있어 차이가 없는 등록자본금등기제도를 실시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 실제 납입자본금 금액, 외국투자자 측의 출자비율 등 기준을 인상해서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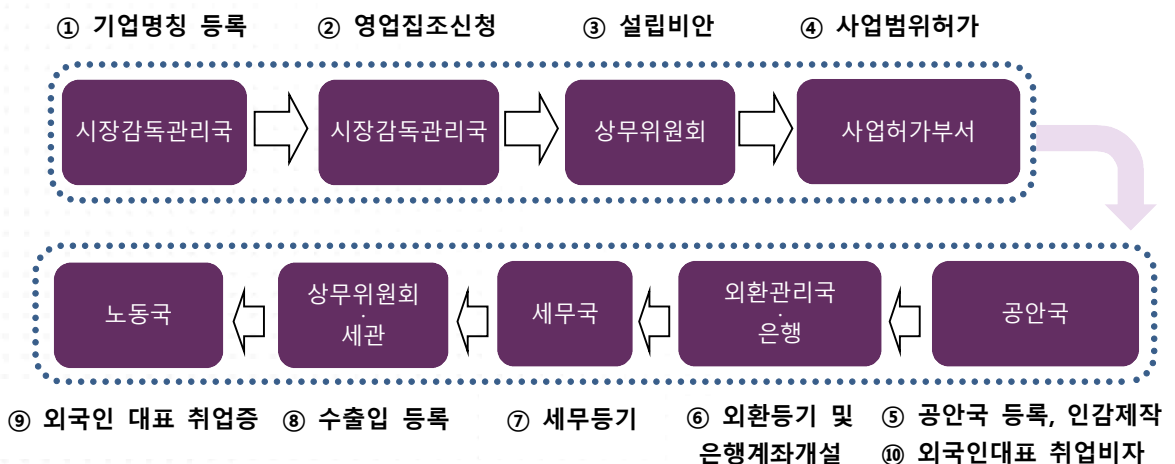
5) 등록자본금은 과거 25%의 최저출자율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25% 이하의 출자도 가능함. 단, 25% 이하의 경우 세무취급 등 방면에서 내자기업으로 동등시하므로 외상투자기업에 특별혜택이 있을 경우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없음. 따라서 투자 시 당해 분야에서 외상투자기업에 특별혜택의 유무를 확인하고 투자비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즉,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회사설립 시 등록자본금 금액 및 납입시간을 확정하고 신청서 및 정관에 기입하면 되고 실제 납입한 후 자체적으로 합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등록자본금의 실제 납입 및 납입시간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 규정은 외국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종에 특별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등록자본금금액 및 납입시간을 결정할 수 있음

✓ 중국투자법인 진입제도

- 문화 콘텐츠 관련 외국 투자법인의 영업범위는 대부분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금지산업도 있음. 따라서 영업범위 확정시 상세한 자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아래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공시하고 있음. 네거티브 리스트 중 일부는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고 일부는 반드시 중국 측 투자자가 지배지분을 차지해야 하는 산업임. 최근에 발표된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는 2021년 12월 27일에 발표되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 이외의 업종일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내자기업과 동일하고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고 등기절차를 통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회사설립등기제도 관련 법령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최신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회사설립 등기 절차



3

인수합병 (M&A)



- ❖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직접적인 투자방식 외에 기업 인수 및 합병(M&A)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투자할 수도 있음
 - 현지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시기를 단축하는 투자방법으로 M&A 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게는 유통망 구축을 위해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신생기업 설립보다는 기존 우량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비용과 인력절감 뿐만 아니라 초기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M&A 는 신설투자에 비해 이미 구축된 유통망을 이용함으로써 시장 진입이 용이함
 - 인수합병의 방식에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회사 또는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중국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함
- ❖ M&A 를 통한 기업변경 및 설립 절차
 - 지분을 통한 기업 설립의 경우 외국 기업은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의 원래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함
 - 자산 인수를 통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외자 기업은 기업 설립 절차에 따라 시장감독관리국에 기업설립 등기를 하고 영업집조를 받음
 - 인수합병 인허가절차에서는 아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구비함이 바람직함

[표-14] 중국기업 M&A 방법

구분	세부 정보	자산인수
내용	지분인수계약 체결 후 중국 기업을 절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자산을 인수하거나 또는 자산을 인수한 후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장점	절차상 간편하여 인수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주로 취하는 인수방식임	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에 자산의 적법성, 소유권, 저당 여부 등 사항만 확실하게 조사하면 되므로 리스크가 지분인수에 비해 작음
단점	기존회사의 채무를 부담, 리스크가 크므로 지분인수 시 피인수기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함
행정수속	한국 투자자는 피인수기업(중국기업)의 원래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함	인수 후 기업설립 시 한국 투자자는 동시에 시장감독관리국과 상무부서에 기업설립 등기 및 비안을 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함

[표-15] 상장회사 M&A 방법

A주식 ⁶⁾ 인수를 통한 M&A	B주식 ⁷⁾ 인수를 통한 M&A
- <외국투자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을 적용함 - 외국투자자 상장회사 A주식 인수는 상무부에서 비준해야 함	- B주식은 원래 외국의 개인 또는 회사가 소지하던 주식으로써 이러한 주식 인수는 회사의 성격 또는 조직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B주식 인수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수하면 됨

[표-16] M&A관련 규정

구분	세부 정보
지분 또는 자산 대금의 지급	- 지분인수, 자산인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중국 기업에게 양도받은 주식이나 출자한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 특수한 사유로 인해 이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득하고, 영업집조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양도받은 주식이나 출자한 자산에 대가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1년 내에 지불 완료해야 함 - 만약 외국투자자가 증자인수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공상등기 신청 시 증자금액의 20%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25% 이하의 경우 인수금은 반드시 3개월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실물, 상표권, 특허권 등으로 출자할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함
외국 투자자 지분 비율	- 인수합병 후의 외상투자기업 외국 투자자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외상투자기업만이 외상투자기업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외국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5% 이하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특혜를 받을 수 없으며 시장감독관리기관의 영업집조, 외환관리국의 외환등기에는 “외자비율이 25% 이하”라고 명시함 - 증자를 통해 인수합병 시 외상투자기업이 영업집조를 신청할 때 납입한 등록자본금이 새로 증가한 등록자본금의 20%보다 적어서는 안 됨
채권 채무	- 지분인수 시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기업 전부의 채권과 채무를 승계. 외국투자자, 중국 기업(대상기업) 및 기타 당사자는 중국 기업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별도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단, 이러한 협의는 제3자와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됨 - 자산을 양도하는 중국 기업은 투자자가 심사비준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기

6) 인민폐 거래 중국인/영구거주권 취득한 외국인/중국에 등록 설립된 기업으로 제한

7) 외국인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

	15일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급하여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공고함
자산 평가	- 인수하고자 하는 지분 또는 자산이 국유자산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국내 자산평가기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또한 국가자산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인수대상이 국유자산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를 필수적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 단, 쌍방이 인수합병의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산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반독점 심사	- <인수합병 규정> 및 반독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인수합병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청하여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함

✓ 인수합병 시 유의사항

-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 문제는 외자기업이 중국기업 M&A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이므로 M&A 를 진행하기 전, M&A 대상 회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충분한 조사 및 이해가 필요함. 특히 중국 기업을 조사할 때는 중국 측이 제공한 자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제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M&A 협의시 관련 정보, 자료 공개 및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진술 및 보증 조항, 배상책임 등의 조항에 유의하여 계약서를 치밀하게 작성해야 함
- M&A 진출에는 중국의 정치 및 사회시스템에 따른 리스크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단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진출에 앞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상무부 등 각 관계부처가 외자기업 M&A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사전에 상호 배치되는 조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법률 해석 오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센터 안내

I KOCCA 북경비즈니스센터 소개

1 운영 목적



- ✓ 한국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정보 · 전문가(법률)자문 · 회의통역
- ✓ 현지기업 정보조회 지원 등 맞춤형 현지 종합서비스 제공

2 시설 지원



- ✓ 방송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게임 · 실감콘텐츠 등 한국 콘텐츠 상품 전시
- ✓ 북경 현지에서 필요한 회의 공간 지원



주중 한국문화원 1층 상설전시공간

II

KOCCA 북경비즈니스센터 주요 업무

✓ **통역 지원** : 한국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에 필요한 통역 서비스

- 통역원 : 북경비즈니스센터 통역 풀 활용
- 지원횟수 : 월 2 회, 회당 3 일 무료 지원, 추가 지원 요청 시 소요비용 기업 부담
- 지원지역 : 북경비즈니스센터 내 혹은 외부(북경시 한정), 온라인일 경우 장소 제한 없음
- 지원사항 : 통역지원, 1:1 비즈니스 미팅 혹은 행사 참여 시
- 운영방식
 - (신청)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사업안내/해외센터 → 북경센터 메일 문의
 - ※ 지원희망일자 2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 신청서 접수 시 통역유형 · 지원일정 · 참가인원 · 내용에 대한 전달 必
 - (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 →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통역원 확정 → 기업과 통역원 매칭 → 통역 지원 → 상담일지 제출
- 통역비용 : 무료 지원

✓ **전문가 상담**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현지자문단

- 상담분야 : 마케팅 / 법률 / 회계 / 방송 / 게임 5 개 분야
- 구성 : 북경현지 전문가 17 명
- 상담방법 : 온라인상담, 북경비즈니스센터 內 대면상담
- 신청방법 : welcon.kocca.kr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문의콘텐츠 검토 및 확인
- 상담비용 : 무료

✔ 기업정보조사 : 중국 현지기업 등록정보 제공

- 조사대상 : 중국 현지법인
- 조사내용 : 법인설립일, 등록자본, 법인대표, 직원 수, 채무관계, 소송·채무·납세 정보 등

✔ WECHAT 공식계정 홍보 : 북경센터 공식계정을 통한 장르별 기업 및 콘텐츠 소개

- 발송주기 : 주 1 회
- 수신대상 : 중국 바이어 기업 관계자(팔로워 약 2,000 명)

2016年12月16日19:27



2016年12月1日17:30



* 문의 : 김영빈 대리 (전화: +86 10 6501 9787, 이메일: ybkim@kocca.kr)

북경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윤호진 센터장	+86-10-6501-9971	hgyoon8591@kocca.kr
이향옥 차장	+86-10-6501-9355	hiangok@kocca.kr
김영빈 대리	+86-10-6501-9787	ybkim@kocca.kr
유 종 주임	+86-10-6501-9951	jong2@kocca.kr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2년 14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작성 감수 : 윤호진 센터장

작성 : 한중콘텐츠연구소

책임집필: 김원동 대표, 나진희 실장

조사 및 리서치: 이영결 연구원

인포그래픽, 차트 및 통계: 정유진 연구원

번역: 임선애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2년 9월 7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KOCCA